

『祭祀冠服制』에 나타난 袁世凱의 ‘大同’ 의식의 실제

최 규 순[†]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The Reality of Shi-Kai Yuan's 'Unity' Spirit in *Jisiguanfuzhi*

Kyusoon Choi[†]

Dept. of Traditional Costume, Dankook University

접수일(2010년 4월 21일), 개재확정일(2010년 5월 18일)

Abstract

Yuan Shi Kai,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ina, established a ceremonial uniform system based on ancient styles in 1914 just before the national polity was changed to the Empire of China in 1915. This system is *Jisiguanfuzhi* (a system on costumes for memorial services), and figures included in the system are *Jisiguanfutu* (figures showing costumes for memorial services).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Jisiguanfuzhi* and *Jisiguanfutu* and to approach the background idea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with a focus on the meaning of ‘unity.’ *Jisiguanfuzhi* regulates the ceremonial uniform system of all classes from the President along with the 1st-class to the 5th-class people. The uniform consists of a crown, robe, belt, the mid-section cloth, and boots. In addition, the uniforms of ritual musicians and dancers are included. The basic principles in establishing the system were the restoration of ancient systems, the adoption of convenience, the acceptance of current practices, and the implication of symbolism. *Jisiguanfuzhi* clarifies that the pattern of the ceremonial uniforms was modeled on *Juebianfu*, for religious services. The reason for choosing *Juebianfu* for religious services was to achieve ‘unity’ and *Juebianfu* was associated with ‘unity’ because it was common to all, from the emperor to the gentlemen class, in ancient times. Yuan Shi Kai tried to show flexibility to the gentlemen class who represented the intellectuals at that time by adopting *Juebianfu* for religious services, fearing that the gentlemen class might oppose the attempt to restore the imperial system. Therefore, although *Jisiguanfuzhi* adopted mostly *Mianfu* and royal sacrificial robes, it also emphasized ‘unity’ by professing that the uniforms were based on *Juebianfu* for religious services.

Key words: Shi-Kai Yuan, *Jisiguanfuzhi*, *Jisiguanfutu*, Empire of China, Unity; 袁世凱, 『祭祀冠服制』, 『祭祀冠服圖』, 中華帝國, 大同

I. 서 론

전통사회에서 복식은 통치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기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choi@dankook.ac.kr

본 연구는 2009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보조장학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도 하였는데, 그 이용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새로운 국가가 건설된 후 여러 제도가 제정되는 가운데 복식제도 역시 새로 마련되기도 하였고, 또 한 국가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사회의 안정과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복식제도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또 때로는 한 국가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다른 체제로 바꾸는 와중에 복식제도 역시 이에 부합되도록

바꾸기도 하였다. 한 국가가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중에 이에 부합하는 복식제도를 새로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과 중국 모두 근대에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1897년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면서 복식제도 역시 제후국 服制에서 황제국 복제로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또 중국은 1915년에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바꾸기 위해 한 해 전인 1914년에 미리 고대의 祭服을 복원한 복식제도를 제정하였다. 한국에서 전통왕조인 '조선'이 국가 위상을 높여 '대한제국'으로 국체를 바꾸는 것은 사회적으로 별 무리가 없는 것이었고, 황제국 복제의 제정 역시 국체 변경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반면 중국에서 서구식 민주공화정체인 '중화민국'에서 다시 고대의 국가체제인 황제가 다스리는 '중화제국'으로의 복귀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국체를 변경하기에 앞서 고대의 복식제도를 먼저 복원시키고, 이를 착용한 채 고대에 행해졌던 일련의 儀禮를 행한 후, 마침내 황제체제로의 복귀가 시도되기에 이른다. 이런 시도는 어찌 보면 복식을 통해 사회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복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회의식의 변화와 역행하여, 복식을 통해 사회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이 두 복제 개정은 '복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근대의 비슷한 시기에 행해졌던 이 '복고적인' 복식제도의 제정과 그 제도의 사회적 성격에 관심을 갖는다. 서구문물이 불멸듯이 들어오고 사회의식도 변화하는 중에 시행된 두 나라의 복고적인 복식제도 제정은 비교 연구대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제국으로의 국체 변경에 부응하는 복식제도를 규정한 『大韓禮典』과 중화제국으로의 국체 변경을 위해 제정한 복식제도인 『祭祀冠服制』는 모두 아직 그 전체 내용이 소개되지 않았다. 두 자료의 비교 속에 근대 한국과 중국의 복고적인 복식제도 제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복식규정을 소개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필자는 최근 『대한예전』 복제의 성격을 규명한 연구를 진행하였고(최규순, 2010), 이어 본고에서 『제사관복제』 복제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사관복제』는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년]가 帝制復活을 시도하면서 제정한 祭服제도이다. 위안스카이는 1914년 8월 『제사관복제』를 통해 고대의

제도를 복원한 제복을 새로 제정하고, 이 제복을 입고 1914년 9월 공자의 사당에서 제사를 올렸으며, 다음해 12월 12일에 祭天儀式을 거행함과 함께 황제로 등극하였다.

『제사관복제』에서는 새로 제복을 제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것이 고대의 爵弁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冕服을 제복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제복의 정통성을 고려한다면 면복에 기초해야만 가장 위신이 서는 것이었고, 『제사관복제』의 세부내용을 보면 실제로 면복의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안스카이는 왜 면복의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된 복식에 대해 작변복을 취했다고 표명해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정치·사상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그 이유를 복식을 통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한 데서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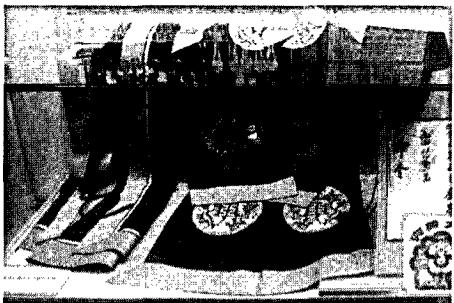
『제사관복제』는 문자로 제도를 규정한 자료이고, 여기에는 제도를 따로 그림으로 나타낸 『祭祀冠服圖』가 부수된다. 이 『제사관복제』와 『제사관복도』(이하 양자를 연속으로 언급할 때는 「제사관복제·도」라 함)는 최근 그 일부내용이 소개되었으나(崔圭順, 2007),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그 전체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체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므로 인해 중국에서는 수십년동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진속의 전혀 다른 인물이 위안스카이로 알려져 왔었고, 북경 군사박물관에 소장된 1等 관원의 제복 유물이 위안스카이가 제천행사에 착용했던 복식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그림 1)-(그림 2). 또 이 제도에 근거해 제작된 유물이 清代의 것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그림 8(6))(高春明, 2005). 본 연구는 『제사관복제·도』의 전체내용을 소개하여 이러한 중국 복식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또 작변복을 취했다고 밝힌 이 제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작변복을 취했고 반대로 어느 정도 면복을 취했는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변복을 취했다고 밝힌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한국과 중국 근대 복식의 '복고적'인 성격을 비교 연구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관복제·도』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다. 다음, 고대의 작변복과 면복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한 후, 『제사관복제·도』에 반영된 정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사관복제』에서 언급되는 '大同'의 의미를 분석하여 위안스카이가 작변복을 착용했다고 밝힌 의도를 파악한다.



<그림 1> 인물들 중 袁世凱가 있는 것으로 오해된 대표적인 사진. 사진 속 인물들은 2等 관원의 제복 착용

자료출처 : 鮮爲人知的歷史: 馮國璋梁啓超曾被袁世凱驅駁. (2008). <http://www.google.co.kr>



<그림 2> 袁世凱가 입은 大總統 제복으로 오인된 1등 제복 유물. 北京 軍事博物館 소장

자료출처 : 歷史博物館裏的袁世凱是一個部級以下官員假冒的. (2008). <http://xunshan.blshe.com>

II. 『祭祀冠服制・圖』의 구성과 내용

1. 『祭祀冠服制』

『제사관복제』는 중화민국 3년인 1914년 8월에 政事堂禮制館에서 간행하고, 財政部印刷局에서 인쇄하였다. 1冊 1卷이고, 총 16면이다.

제1면은 표지이고, 내용은 제2면부터 시작되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內務總長 주치천(朱啟鈴: 1871~1964년)<그림 8(2)>이 제관·제복을 규정하여 반행하게 된 경위를 요약한 내용이다(제2~5면). 두 번째 부분은 새로 규정되는 「제사관복제」(자료의 總名과 별도로 내용 중 같은 이름의 「제사관복제」가 있고 여기에 제도가 수록됨)의 본문으로, 대총통 이하 士庶까지의 祭冠·祭服·帶·巾衣·靴와 제사를 올릴 때 참여하는 樂生·舞生의 복식을 규정하였다(제6~8면).

세 번째 부분은 제도에 부수된 「설명서」로, 제관에서 鞠까지 각 복식의 제도를 규정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했다(제10~15면. 제9, 16면은 空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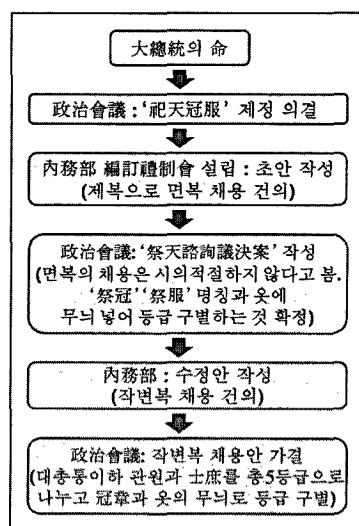
I) 內務總長의 경위서

첫 번째 부분인 内務총장 주치천의 경위서에 의하면 제사관복제도를 제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대총통의 명을 받들어 政治會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입을 ‘祀天冠服’의 제정에 관한 사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담당부서인 內務部에서 編訂禮制會를 설립하여 제관과 제복에 관한 초안을 낸다. 이를 정치회의 의에서 검토하고 ‘祭天諮詢議決案’이 작성되는데 이 의결안에 의하면 편정예제회에서 올린 초안에는 제복으로 면복을 사용하도록 건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祭天諮詢議決案內謂祭服用冕一節……’에서 확인됨). 그러나 정치회의에서 면복 대신 고대의 제도와 현실상황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규정할 것과 관복에 무늬를 넣어 신분을 구별하게 할 것을 결정한다. 또 관모의 명칭은 ‘祭冠’, 옷의 명칭은 ‘祭服’으로 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치회의 의결안에 기초하여 内務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서는 면복보다 역사가 훨씬 깊은 제복이 작변복이므로 면복 대신 작변복을 채용할 것을 건의한다. 이 건의는 이어진 정치회의 토론에서 받아들여지고, 제관의 冠章과 옷의 12장문을 통해 신분을 구별하기로 한다(그림 3).

전체경위를 적은 위의 내용에 이어 「제사관복제」·



<그림 3> 「祭祀冠服制」 제정 경위

「설명서」·圖式을 함께 첨부하니, 정치회의의 의결사항을 잘 준수했는지 그리고 제도의 근거가 합당한지를 살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훈시를 내려줄 것을 대총통에게 청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올린 것이 7월 5일이다.

위안스카이는 이 사안을 비준하여 반행하게 하였고, 또 정사당예제관에 넘겨서 도식 및 「설명서」에 따라 통행하게 하도록 비준하였다.

2) 「祭祀冠服制」의 내용

두 번째 부분인 「제사관복제」는 대총통 이하 사서까지의 제사관복과 악무생의 복식을 규정한다. 각 복식의 앞부분에는 먼저 모든 신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고, 이어 각 신분별로 차별화된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1) 祭冠

祭冠은 작변을 채용하여 겉은 黑色, 안은 朱色으로 하고, 비녀는 쓰지 않는다.

대총통은 赤地 金錦 즉 적색 바탕의 織金 직물로 테두리를 장식한다. 관장은 등근 모양인데 그 안은 여섯 개의 벼 이삭으로 장식하고, 양쪽 줄기 사이에는 明珠 1개를 붙이고 그 주위에 진주 12개를 붙인다. 관끈은 纏色을 쓴다(표 1).

1等 특임관은 남색 바탕의 직금 직물로 테두리를 장식하고, 관장은 등근 모양에 다섯 개의 벼이삭, 紅色 보석 1개, 진주 9개로 장식한다. 관끈은 紫色을 쓴다. 2등 간임관의 관장은 黃色 보석 1개와 진주 7개, 3등 천임관의 관장은 藍色 보석 1개와 진주 5개, 4등 위임관의 관장은 白色 玉 1개와 진주 3개로 장식한다. 2등부터 4등까지의 나머지 사항은 1등과 같다. 5등 土庶는 청색 무늬가 없는 綾으로 테두리를 장식하고, 錦을 쓸 수 없다. 관장은 네모난 모양이고, 玄色 玉을 쓰며, 그 안과 주위에 장식을 하지 않는다. 관끈은 청색을 쓴다.

(2) 祭服

祭服은 작변복의 玄衣 纏裳을 채용하고, 모든 신분이 견직물[絲]을 쓴다. 패옥과 폐슬은 쓰지 않고, 옷에 표현한 무늬의 많고 적음으로 等差를 구별한다.

대총통은 적색 바탕의 직금 직물로 가선을 장식한다. 상의에 12개의 등근 원[團]을 수놓는데, 각각의 원 안에 12장문을 넣는다. 下裳에는 雲海紋을 수놓는다.

1등은 상의에 9개의 원을 수놓고, 원 안에 9장문을 넣는다. 2등은 7개의 원에 7장문을, 3등은 5개의 원에 5장문을, 4등은 3개의 원에 3장문을 수놓는다.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남색 바탕의 직금으로 가선을 장식하고, 하상에는 수를 놓지 않는다. 5등은 옷에 수를 놓지 않고, 몸판과 같은 색의 무늬가 없는 일반 견직물로 가선을 장식하고 錦을 쓰지 못한다. 후은 이를 대신하여 乙種常禮服을 입을 수 있다. 을종상례복은 청색의 袍에 남색 衿의 차림이다(표 2)(중화민국은 건국 元年에 새로운 '服制'를 반포하였는데, 남자옷은 大禮服과 常禮服으로 나누었다. 대례복은 서양식이고, 주간과 야간에 입는 옷을 구별하였다. 상례복도 서양식의 甲種과 중국식의 乙種으로 나누었는데, 을종은 청색 衿에 남색 袍의 차림이다(王宇清, 2005)).

(3) 帶 · 中衣 · 靴[鞋]

帶는 고대 예복에 쓰던 大帶 제도를 채용하여 앞에 紳을 늘어뜨린다. 단 가선 장식은 하지 않는다. 대총통은 적색 바탕의 직금에 주색으로 안감을 하고, 1등부터 4등까지는 남색 바탕의 직금에 흰색[素]으로 안감을 한다. 5등 사서는 錦이 아닌 일반 견직물을 쓰고, 치마의 색과 같은 纏色으로 한다(5등 사서의 帶는 안감에 관한 내용이 없어 흘·겹의 여부가 드러나지 않음).

中衣는 고대 예복의 白紗中單의 형태를 채용하고 여기에 약간의 변형을 준다. 모든 신분이 백색 견직물로 몸판을 만들고, 깃은 衣裳에 두른 가선장식과 같이 한다(대총통 이하 4등까지의 문무 관원은 상의와 하상의 가선장식이 하나씩이지만, 사서는 상의와 하상의 가선

<표 1> 祭祀冠服制 중 신분별 祭冠 형태

身 分	형 태	表	裏	테두리 장식	冠 章		관끈 색	비녀
					형 태	장 식		
大總統	爵弁制 채용	黑	朱	赤地 金錦	圓形	벼이삭6, 明珠1, 珍珠12	纏	사용 안함
1等 官員: 特任官				藍地 金錦	"	벼이삭5, 紅寶石1, 珍珠9	紫	
2等 官員: 簡任官				"	"	벼이삭5, 黃寶石1, 珍珠7	"	
3等 官員: 聘任官				"	"	벼이삭5, 藍寶石1, 珍珠5	"	
4等 官員: 委任官				"	"	벼이삭5, 白玉1, 珍珠3	"	
5等 土庶				青 素綾	方形	玄玉(장식 없음)	青	

<표 2> 祭祀冠服制 중 신분별 祭服 형태

身分	형태	上 衣			下 裳			가선장식
		色	재료	무늬	色	재료	무늬	
大總統	작변복의 玄衣裳制 채용	玄	견직물 [絲]	繡12團, 각 團內 12章	纈	견직물 [絲]	繡 雲海紋	赤地 金錦
1等 官員: 特任官				繡9團, 각 團內 9章			무늬 없음	藍地 金錦
2等 官員: 簡任官				繡7團, 각 團內 7章			"	"
3等 官員: 贈任官				繡5團, 각 團內 5章			"	"
4等 官員: 委任官				繡3團, 각 團內 3章			"	"
5等 士庶				① 종: 위와 같음	무늬 없음	"	"	상의: 玄色絲 하상: 色絲
				② 종: 乙種常禮服	袍 + 褂			

<표 3> 祭祀冠服制 중 신분별 帶 형태

身分	형태	表	裏
大總統	大帶 제도 채용 (紺을 늘어뜨림)	赤地 金錦	朱
1~4等 官員		藍地 金錦	素
5等 士庶	纈色 絲		

<표 4> 祭祀冠服制 중 신분별 中衣 형태

身分	형태	色	재료	깃
大總統	고대 예복의 白紗中單 채용	白	견직물 [絲]	赤地 金錦
1~4等 官員				藍地 金錦
5等 士庶				玄/纈色 絲

<표 5> 祭祀冠服制 중 靴 형태

身分	형태	재료	바 닥
大總統~士庶	淸代 禮靴 채용	견직물[絲]	皂色으로 꾸밈

장식이 각기 다르다. 즉 상의는 봄판과 같은 현색 견직물로 가선을 장식하고, 하상은 봄판과 같은 훈색 견직물로 가선을 장식한다. 대총통부터 사서까지 중의의 깃을 衣裳과 같이한다고 하였는데, 사서의 경우 현색과 훈색 중 어떤 색을 썼는지가 분명치 않다.).

靴[鞋]는 清代 禮靴 형태를 채용하고, 견직물로 만들며, 皂色으로 바닥을 꾸민다(표 3)~(표 5).

(4) 樂舞生 관복

樂舞生의 관복은 수도에 있는 악무생과 각 省에 있는 地方樂舞生에 대해 조금 달리 규정한다.

수도악무생의 冠은 흑색이고, 흑색 바탕의 片金으로 테두리를 장식한다. 관끈은 청색이고, 끈을 묶고 남은 나머지[纈]는 늘어뜨리지 않는다. 위에 정사각형의 판을 덮는다. 관장은 銅으로 만들고, 篆書로 樂生은 ‘樂’字를, 舞生은 ‘舞’字를 새긴다. 옷은 심의에 약간의 변

화를 준 형태이다. 봄판은 남색이고, 깃·소매·허리·아래자락에 흑색 가선을 두른다. 하상은 폭을 나누지 않고, 길이는 발목에 이른다. 봄판 전체에 小葵花를 수놓는다. 帶는 쓰지 않고, 靴는 皂色을 쓴다.

지방악무생은 冠의 가선장식을 흑색으로 하고, 옷에 무늬를 수놓지 않는다.

3) 說明書

세 번째 부분인 「설명서」는 祭冠·祭服·帶·中衣·靴의 제도를 규정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했다.

(1) 祭冠에 관한 설명

제관에서는 작변을 취한 이유, 제관의 재료, 비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관끈으로 纈을 쓰는 이유, 테두리 장식의 색이 상징하는 바, 관장의 무늬의 수와 종류가 상징하는 바를 설명했다.

제관의 형태로 작변을 취한 이유는 작변 역시 고대에 제관으로 사용되었고, 천자부터 士까지 모두 이것을 썼기 때문이다. 재료는 태고적에는 布를 쓰다가 중고시기 이후에는 견직물을 썼는데, 지금은 견직물이나 모직물을 쓰도록 한다. 비녀는 본래 머리에 꿰는 것인데 지금은 이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서양식으로辯髮을 자른 때문일 것임) 사용하지 않는다. 또 관끈은 비녀에 걸어서 쓰는 纈 대신, 비녀가 없어도 되는 纈을 쓴다. 테두리 장식에서 대총통이 적색을 쓰는 것은 고대 예복에서 중의의 가선을 적색으로 하여 “赤心奉神(마음을 다하여 신을 받듦)”을 상징하던 것을 본뜬 것이고, 문무관이 남색을 쓰는 것은 이들이 월창주를 붓는 일[襍將]에 종사하므로 대총통과 구별하기 위함이며, 사서가 무늬없는 纈으로 하는 것은 질박함을 보이기 위함이다. 대총통의 관장에 진주를 12개 쓴 것은 12월에 상응하기 위함이고, 벼이삭[嘉禾]으

로 장식한 것은 풍성하게 곡식이 익음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候祭 관원의 관장을 오색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 주위의 진주 장식을 9·7·5·3개를 쓴 이유는,『주례』『弁師』의 왕의 피변을 오채옥으로 장식한다는 것과 그 아래의 제후부터 대부까지의 신분이 등차에 따라 수를 달리함을 본뜬 것이다.

(2) 祭服에 관한 설명

제복은 작변복의 玄衣와 繡裳을 채용한 이유, 패옥과 폐슬을 쓰지 않는 이유, 무늬 표현의 원칙 및 의미 등을 설명했다.

현의 훈상을 채용한 것은, 제관에서 '大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고대에 천자에서 土까지 통용했던 작변을 채용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패옥과 폐슬은 고대에 德을 드러내기 위하여 弁服과 면복에 항상 찼었지만 춘추시대에 이들을 없앴으므로(이에 관한 내용은 『後漢書』志29「輿服」上과 『宋書』권18「禮志」5 등에 나타남). 고대에는 패옥과 폐슬이 있어 군신과 상하를 구분했는데, 전국시대에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인 이들을 제거하고 대신 등근 모양의 係璲[繫璧]만을 남겨 패옥과 폐슬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임), 이러한 옛날의 뜻을 본받아 번거로운 것을 생략하기 위하여 쓰지 않는다. 옷에 수놓은 무늬는 日·月·星辰·山·龍·華蟲·宗彝·藻·火·粉米·黼·黻의 12장인데, 이 무늬를 등근 원 안에 넣고 무늬의 숫자와 원의 숫자로서 등급을 구별한다. 숫자를 차감하는 원칙은 『주례』『司服』疏의 衣冕은 9장을 쓰고, 鮫冕은 7장을 쓰고, 翠冕은 5장을 쓰고, 緺冕은 3장을 쓰도록 한 것을 따른다(면복은 大裘冕, 衣冕, 鮫冕, 翠冕, 希冕[緺冕], 玄冕의 六冕服이 있음). 이 중 본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각 면복별 무늬의 수는 賈公彥의疏가 아닌 정현의 注에서 나옴). 하상에는 무늬를 쓰지 않는데, 대충통은 나라의 원수이며 다른 신분과 구별하기 위해 하상에 운해문을 수놓는다. 여러 무늬 중 운해문을 선택한 것은 구름과 바다가 하늘[天]과 땅[地]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3) 帶·中衣·靴에 관한 설명

帶는 고대의 예복에서 혁대와 대대를 사용했었는데 이 중 대대만 취하는 이유와 가선장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대 예복에서 혁대는 패옥과 폐슬을 거는 용도로 썼는데, 이제 패옥과 폐슬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혁대 역시 사용하지 않고 대대만 사용한다. 고대의 대대는 가장자리에 선을 둘러 장식했는데, 이제 봄판을 錦으로 하므로 그 선장식을 없앤다.

중의는 형태에 관해 설명했다.

제복의 중의로 夏·殷·周三代에서는 深衣를 입었는데(허리에 재봉선이 들어가 상의와 하상이 분리된 형태), 唐代 이후 간편함을 좇아 심의의 형태에서 허리에 재봉선이 없고 치마의 폭도 분리하지 않은 형태로 바뀌었으며, 이름도 '中單'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간편함을 좇아 이 형태를 취한다.

靴[鞋]는 본래 제복에 쓰던 鳥 대신 靴를 쓰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석을 벗고 墓에 올라가고, 제사가 끝나면 단에서 내려와 석을 신었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靴 대신 신고 벗기기에 편리한 鳥을 계속 신었는데 지금의 의례에서는 단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생략되므로 석을 쓰지 않고 靴를 쓴다고 하였다.

(4) 樂舞生 관복에 관한 설명

악무생의 관복은 옷과 제관의 형태, 지방악무생 복식에 관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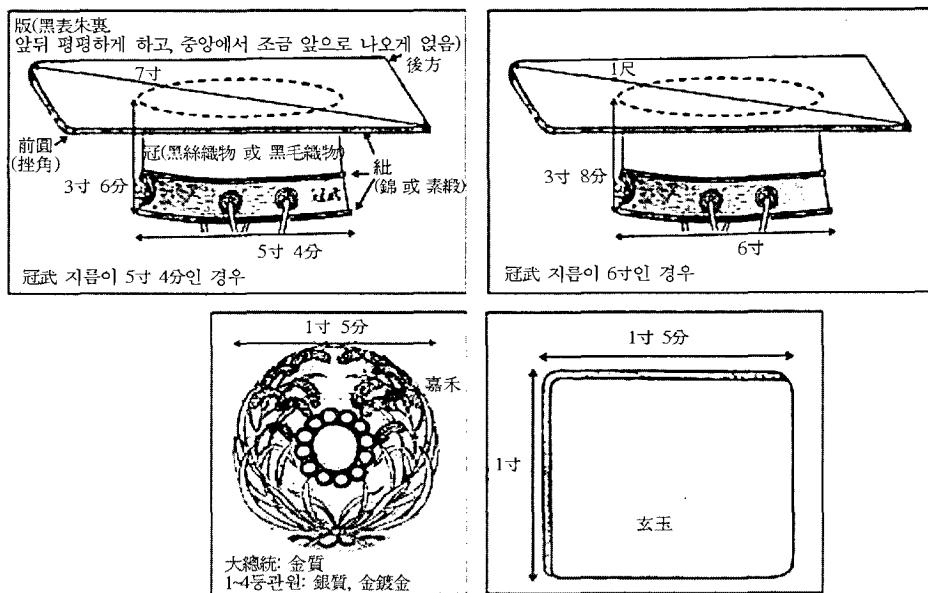
관복에 심의의 형태를 쓰는 것은 간편함을 좇은 것이고, 冠의 형태를 네모반듯하게 한 것은 다른 祭冠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지방악무생 복식에서 제관의 태두리 장식을 흑색으로 하고 옷에 수를 놓지 않은 것은 절박함을 보이기 위함이다.

2. 『祭祀冠服圖』

『祭祀冠服圖』 역시 1914년 8월에 政事堂禮制館에서 간행하고, 財政部印刷局에서 인쇄하였다. 1冊 1卷으로 되어 있고, 총 49면이다.

제1면은 표지이고, 제2면부터 내용이 시작된다. 내용은 제관부터 화까지의 복식을 도식으로 먼저 제시하고, 이어 세부 형태를 서술했다. 제2면에서 제7면까지는 제관과 관장, 제8면에서 제22면까지는 상의, 제23면에서 제29면까지는 하상, 제30면에서 제35면까지는 중의·帶·靴, 제36면에서 제42면까지는 악무생 관복에 관한 것이다. 이어 제43면과 제44면에는 '附 祭服總圖'라 하여 제복을 전부 착용한 모습과 설명이 있고, 제45면에서 제49면까지는 옷에 수놓는 무늬의 형태가 그려져 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제사관복제』에 규정된 것보다 더 상세하여 제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충해 준다. 아래에서는 <그림 7>에서 전체도식을 소개하고, 복식의 세부규정은 『제사관복제』에 누락된 것만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림 4> 祭冠 세부형태

제관은 아래 틀 부분[冠武]은 등글게 하고, 흑색 견직물(「설명서」에 의하면 모직물도 가능)로 감싼다. 版은 앞이 등글고(모서리를 죽임[挫角]) 뒤가 네모나다[前圓後方]. 위는 흑색, 아래는 주색으로 하고, 판은 평평하게 않는다. 또 판의 네 모서리와 관무 주위에 錦으로 선[紙]을 두른다. 제관의 치수는 관무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관무 지름은 5寸 4分인 것과 6寸인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5寸 4分인 관은 판의 지름 7寸, 높이 3寸 6分으로 한다. 관무 지름이 6寸인 관은 판의 지름 1尺, 높이 3寸 8분으로 한다. 冠章의 재질은 대총통은 금이고, 1등부터 4등 관원까지는 銀에 鍍金을 한다. 지름은 1寸 5分이다. 5등 사서의 관장은 가로 1寸 5分, 세로 1寸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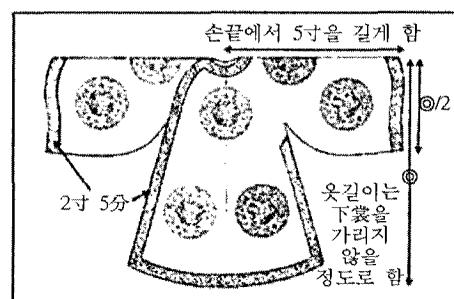
제복은 크기를 착용자의 몸에 맞게 한다. 상의의 길이는 하상을 가리지 않게 하고, 소매는 손끝보다 5寸이 길며, 소매너비는 옷 길이의 반이다. 깃·소매끝·아래자락에 선을 두르며, 너비는 2寸 5分이다. 깃은 대총통만 圓領으로 하고, 나머지는 양쪽 깃을 교차시켜서 方曲領이 되게 한다. 원 안의 무늬는 대총통은 12장문을 모두 쓰고, 1등 관원은 일·월·성신을 제외한 9장, 2등 관원은 화충·이하·黻까지의 7장, 3등 관원은 종이 이하·黻까지의 5장, 4등 관원은 米·黼·黻의 3장을 쓴다. 하상은 앞 3폭·뒤 4폭의 총 7폭이다. 각 폭마다 3개의 주름을 잡고, 양쪽 옆과 아래에 선(綽과 緺)을

두른다. 길이는 발목에 이른다(그림 5).

중의는 크기를 착용자의 몸에 맞게 하고, 길이는 발목에 이른다. 깃은 方領이고, 소매 길이는 손끝에서 5寸이 길다.

帶는 너비가 3寸이다. 앞에서 맷고, 아래에 紳을 늘어뜨리는데 길이는 하상의 선장식과 나란하게 한다.

악무생의 冠은 견직물이나 면직물을 모두 쓸 수 있다. 관장은 네모나고, 가로·세로 모두 1寸이다. 銅으로 만든 후 鍍金을 하고, ‘樂’자와 ‘舞’자는 陽刻으로 새긴다. 옷은 남색의 견직물이나 면직물로 만든다. 길이는 발목에 이르고, 너비는 착용자의 몸에 맞춘다. 소매는 손끝을 넘기게 하고, 袖口는 6寸이 기준이다. 양쪽 깃을 서로 감싸서 直領이 되게 한다. 선의 너비는 2寸이다.



<그림 5> 祭服 세부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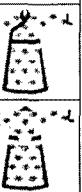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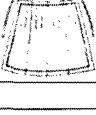
소매의 랭은 반대로 다시 꺾는 형태이고, 허리의 랭은 뒷면에서 착용자의 몸에 맞추어 단추로 펜다(그림 6).

祭服總圖는 제복을 모두 갖추어 입은 모습을 그림과 설명으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에 의하면 제복은 중의→後裳→前裳→상의→帶의 순서로 입는다.

『제사관복도』의 마지막에는 대총통 이하 4등 관원 까지 쓰는 무늬인 十二章圖, 九章圖, 七章圖, 五章圖, 三章圖가 있다. 무늬는 繡를 놓거나 커씨[刻絲]로 나타낸다(그림 7)(『祭祀冠服制·圖』의原文은 지면의 한계로 수록하지 못하고, 조만간 별도의 지면을 통해全文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림 6> 樂舞生 衣 세부형태

服飾	大總統	一等	二等	三等	四等	五等	樂舞生
冠							
冠 章							 樂生
上衣	前面 						上衣 
上衣	後面 						上衣 
下裳	前面 						
下裳	後面 						
中衣		12章	9章	7章	5章	3章	
		이하 大總統~五等 공통사항					
		帶		紳		靴	
							祭服總圖

<그림 7> 「祭祀冠服圖」의 복식

III. 『祭祀冠服制·圖』에 반영된 爵弁服과 冕服의 요소

1. 고대의 爵弁服과 冕服

1) 爵弁服

작변복은 ‘爵弁을 쓸 때의 복식 일습’을 말한다. 작변은 夏에서는 ‘收’라 했고, 殷에서는 ‘冔’라 했으며, 周代에 이르러 ‘작변’이라 하였다. 爵弁의 ‘爵’은 ‘참새’를 의미하는 ‘雀’과 통용된다. 따라서 작변은 ‘雀弁’이라고도 쓴다(高春明, 2001). ‘爵[雀]’이라는 명칭은 그 관의 형태와 색이 참새의 머리와 같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작변의 판은 앞이 좁거나 뒤가 좁아서 참새 머리와 유사하고, 색도 참새의 머리색과 같은 검붉은색이다. 판의 크기는 하·은·주 삼대 모두 너비 8촌, 길이 1척 2촌이다(작변에 관해서는 筇鬯의 「獨斷」, 「後漢書」「輿服志」, 「晉書」「輿服志」, 「通典」 등에 나타나는데, 이에 의하면 하·은·주 삼대의 작변의 형태가 조금씩 다름。夏와 周는 앞이 작고 뒤가 크고, 殷은 앞이 크고 뒤가 작음。색에 관한 표현도 조금씩 다른데 흑색에 적색이 조금 들어있는 것(黑而微赤)이라고 하거나 혹은 적색에 흑색이 들어있는 것(赤而微黑)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참새의 머리색과 같다(似爵頭色; 黑而赤, 似爵頭之色)고 함(崔圭順, 2007).). 작변의 전체적인 형태는 면관과 같지만 앞뒤에 늘어뜨린旒가 없는 점, 판이 앞으로 숙이지 않고 평평한 점 등이 다르다.

머리에 작변을 쓸 때 몸에는 검은색 상의[純衣]에 붉은색 치마[纁裳]를 입는다. 여기에 紳부분에 繒色 가선을 두른 띠를 매고, 적황색 폐슬을 찬다(『儀禮』「土冠禮」: “爵弁服, 纁裳, 純衣, 繒帶, 鞍韁。” 鄭玄注: “純衣”, 絲衣也。餘衣皆用布, 唯冕與爵弁服用絲耳。先裳後衣者, 欲令下近繒, 明衣與帶同色。‘鞍韁’, 繒韁也。土繒韁而幽衡, 合韁爲之。上染以茅蒐, 因以名焉。今齊人名蕡爲鞍韁。韁之制似韁。” 정현의 주에 의하면 여기서 ‘純’의 의미는 絲 즉 견직물이고, 그 색은 띠와 같은 繒色임。또 폐슬의 색인 ‘繒’은 『禮記』「玉藻」에서 정현이 “繒, 赤·黃之間色, 所謂鞍也”라고 함.)。신은 하상과 같은 색인 붉은색[纁] 허리를 신고, 장식은 모두 흑색으로 한다(『儀禮』「土冠禮」: “爵弁纁履, 黑約·纁·純, 純博寸”).

작변복은 본래 천자에서 土까지의 신분이 입는다. 특히 上에게는 최고의 예복인데 군주의 제사를 도울 때,

관례의 三加禮 때, 親迎 등에 입고(『儀禮』「土冠禮」, 『禮記』「雜記」上 經文과 鄭玄 注), 哀禮에서 復[招魂]을 할 때 復衣로도 쓴다(『禮記』「喪大記」, 「雜記」經文과 鄭玄 注). 招魂을 할 때는 죽은이가 살아생전에 입었던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쓰는데, 이 옷을 ‘復衣’라 함. 죽은이가 上이면 복의로 작변복을 사용). 한대 이전에 土 이상의 신분이 모두 착용하던 작변복은 漢 이후에는 주로 樂人이나 舞人이 착용하였고, 宋代 이후 제도에서 보이지 않는다.

2) 冕服

冕服은 “著冕所服之衣”(『周禮』「大行人」鄭玄注) 즉 면관을 쓸 때의 복식 일습을 말한다.

‘면관’의 ‘冕’은 ‘기울다, 숙이다’는 뜻의 ‘俛’과 통하고, 관의 이름도 이 형태에서 유래한다. 전체 형태가 뒤보다 앞이 숙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앞이 숙은 이유는 면관의 아래부분인 冠卷[武]이 앞이 낮고 뒤가 높아서 그 위에 판을 얹으면 판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면관은 본래 작변에서 유래한다. 작변의 형태를 기초로 판의 앞뒤에 구슬을 펜 끈인 旒를 늘어뜨려 작변과 차별화시켰다. 또 작변이 앞뒤가 평평한 데 비해 면관은 앞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면복은 본래 여섯 종류가 있고, 이를 六冕服이라 한다. 육면복은 大裘冕, 衫冕, 驚冕, 麟冕, 締冕[希冕], 玄冕이고, 면관의 旒과 옷에 쓰는 무늬의 수로 구별한다.

면복의 착용신분은 천자부터 대부까지인데, 단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었다. 천자는 육면복 모두, 公은 곤면 이하의 5종, 侯와 伯은 별면 이하의 4종, 子와 男은 취면 이하의 3종, 孤는 치면과 현면의 2종을 입고, 대부는 현면 하나만을 입을 수 있다.

면복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나 대략 면관, 상의, 하상, 중의[중단], 衫, 棲, 烏, 大帶, 草帶, 폐슬, 폐옥, 綏, 主, 劍 등 14가지이다.

면복의 상의와 하상에는 무늬를 표현하여 착용자의 신분을 구별한다. 이 점이 旒의 유무와 함께 면복과 작변복을 구별짓는 요소이다. 작변복은 상의와 하상에 무늬가 없음에 비해 면복은 무늬를 표현하는 것이다. 무늬는 본래 12장문을 모두 썼는데, 주대에 들어 일·월·성신을 깃발에 표현하고 면복에는 나머지 9장만 쓴다. 즉 곤면은 9장, 별면은 화충 이하의 7장, 취면은 종이 이하의 5장, 치면은 분미·보·불 3장, 현면은 불 1장이다(대구면에 무늬를 쓰는가의 여부는

갓옷인 大裘 위에 다시 상의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역대 논란이 있으므로 서술을 생략함. 대구면의 면관에 旒를 늘어뜨리는가의 여부와 옷에 무늬를 표현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역대의 논쟁 및 衣裳과 면복의 관계는 崔圭順(2007)에 정리됨.). 漢 이후의 왕조에서는 육면복 중 주로 곤면복이 채택되는데, 대개의 왕조에서 여기에 12장을 모두 표현한다(물론 9장 면복도 ‘곤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됨. 즉 ‘곤면’은 본래 육면복 중의 하나였던 것이 후에는 ‘면복’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곤면’이 ‘면복’의 개념으로 쓰이면서 그 안에 12장과 9장복을 포함하게 된 것임. 이상의 면복에 관한 사항은 崔圭順(2007)에 정리됨.).

2. 작변복과 면복의 반영정도

중국 고대 사회에서 제복은 전통적으로 冕服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제사관복제』의 제복은 면복이 아닌 爵弁服을 기초로 한다. 때문에 祭冠의 형태가 冕冠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旒가 없는 형태로 제정된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면관과 爵弁의 가장 큰 차이는 旒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작변복보다 면복의 요소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면에서 보면 첫째, 면복만이 갖는 특징을 적용한 것으로 12장문의 사용과 신분에 따른 무늬의 차등 적용이 있다. 12장문은 가장 대표적인 면복만의 특징으로, 옷에 12장문을 사용했다고 하면 작변복이 아닌 면복을 채용한 것이 된다. 무늬를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규정한 것도 작변복이 아닌 『주례』·『사복』의 면복 제도를 채용한 것임을 「설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작변복보다 면복의 특징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제관의 색, 판의 형태, 관장을 통한 등급구별 등이 있다. 제관은 겉을 흑색, 안을 주색으로 하였다. 그런데 고대 작변의 제도에서는 겉을 爵色 즉 검붉은색으로 하는 것만 기록에 나타나고, 안을 무순색으로 하는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비해 면관은 겉은 현색 즉 흑색으로 하고 안은 주색이나 훈색으로 한다(훈색과 주색은 모두 붉은색 계통으로 붉은색 염료에 3번을 담그는가 혹은 4번을 담그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어려운 색임). 훈색은 붉은색에 3번을 담궈서 얹는 색이고, 주색은 분명한 문현 기재가

없어 鄭玄은 ‘4번 넣어서 얹어지는 색인듯하다’라고 하였음. 『儀禮』·『士冠禮』 鄭玄注: “凡染絳, 一入謂之纈, 再入謂之頰, 三入謂之繩, 朱則四入與”). 판은 형태를 前圓後方으로 하였다. 그런데 작변은 판의 형태를 앞이나 뒤가 좁게 해서 참새머리처럼 한다. 이에 비해 면관은 전원후방의 형태로 해서 ‘前圓’은 하늘을, ‘地方’은 땅을 상징한다. 관장은 무늬와 장식을 통해 등급을 구별하였다. 그런데 작변은 그 세부요소 중 신분을 구별하는 표식이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면관은 류의 수로 신분을 구별한다. 이상의 색, 판의 형태, 관장에서의 등급 구별 등은 모두 작변보다는 면관의 특징에 더 가까운 것이다. 셋째, 작변복과 면복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상의·하상·대·중단에 반영되었다. 상의에 혼색을 쓰고 하상에 훈색을 쓴 것은 작변복 뿐만 아니라 면복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또 예복에 대대를 쓴 것, 白紗로 중단을 만들고 깃에 가선을 두른 것 등은 모두 면복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 외 복식의 세부형태를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鞲에서 鳥을 언급하였다. 고대에는 제복에 석을 신었으나 지금은 화를 신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 제복에서 석을 신었던 것은 면복이고, 작변복은 석이 아니라 履를 신었다. 석과 구는 그 등급이 염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석이 구보다 등급이 높다. 따라서 신의 제도를 정할 때 고려한 것은 작변복이 아니라 면복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제사관복제』는 작변복보다 면복의 요소를 먼저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작변복과 면복에 공통되는 요소를 제외하면, 작변복과 면복이 갖는 각각의 특징 중에서 주로 면복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IV. ‘爵弁服 채용’에 나타난 ‘大同’의 의미

중국 근대 사회는 전통사상 및 생활방식과 서구의 그것이 충돌하면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결국 한 왕조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은 시기이다. 1911년 발발한 신해혁명을 계기로 1912년 1월 중화민국 임시 정부가 들어서고, 2월 宣統帝(재위 1908~1912년)가 통치권을 포기함으로써 중국의 마지막 전통왕조인 清은 막을 내린다. 이 와중에 중화민국 초대 大總統을 지낸 (1912~1916년)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으로 임명된 후 황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거쳐 1915년 12월 12일 마침

내 황제로 등극한다. 동시에 국호를 ‘中華帝國’으로 고치고, 1916년부터 ‘洪憲’ 연호를 사용하게 한다.

황제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위안스카이가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은 전통사상을 강조하면서 공자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중국이 쇠락하게 된 이유는 봉건 專制주의의 부폐도, 경제 및 기술의 낙후도, 외세의 침략도 아니고 사람들이 봉건 윤리도덕을 버리고 민주·자유·평등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국가가 쇠락한 이유는 “不在國勢, 而在民心”이라고 본 것이다. 그가 신해혁명 이후 넘쳐나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공격한 무기는 공자와 맹자의 道를 내세운 봉건 전제주의였다. 공자를 높이는 과정에서 1913년 6월에 ‘尊孔令’을 반포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14년 9월에는 ‘祭孔令’을 반포하고 동시에 중화민국 최초로 국가적인 차원의 공자 제사를 지내게 된다(“連發尊孔令和祭孔令 袁世凱導演民國首次官祭孔子”, 2007). 이어 1915년 연말에 圜丘壇에서 祭天 의식을 거행하고 황제로 등극한다. 황제체제의 성공적인 복귀와 자신의 황제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 위안스카이는 공자를 높이고 또 고대 제왕들의 전유물이었던 하늘에 대한 제사의식을 거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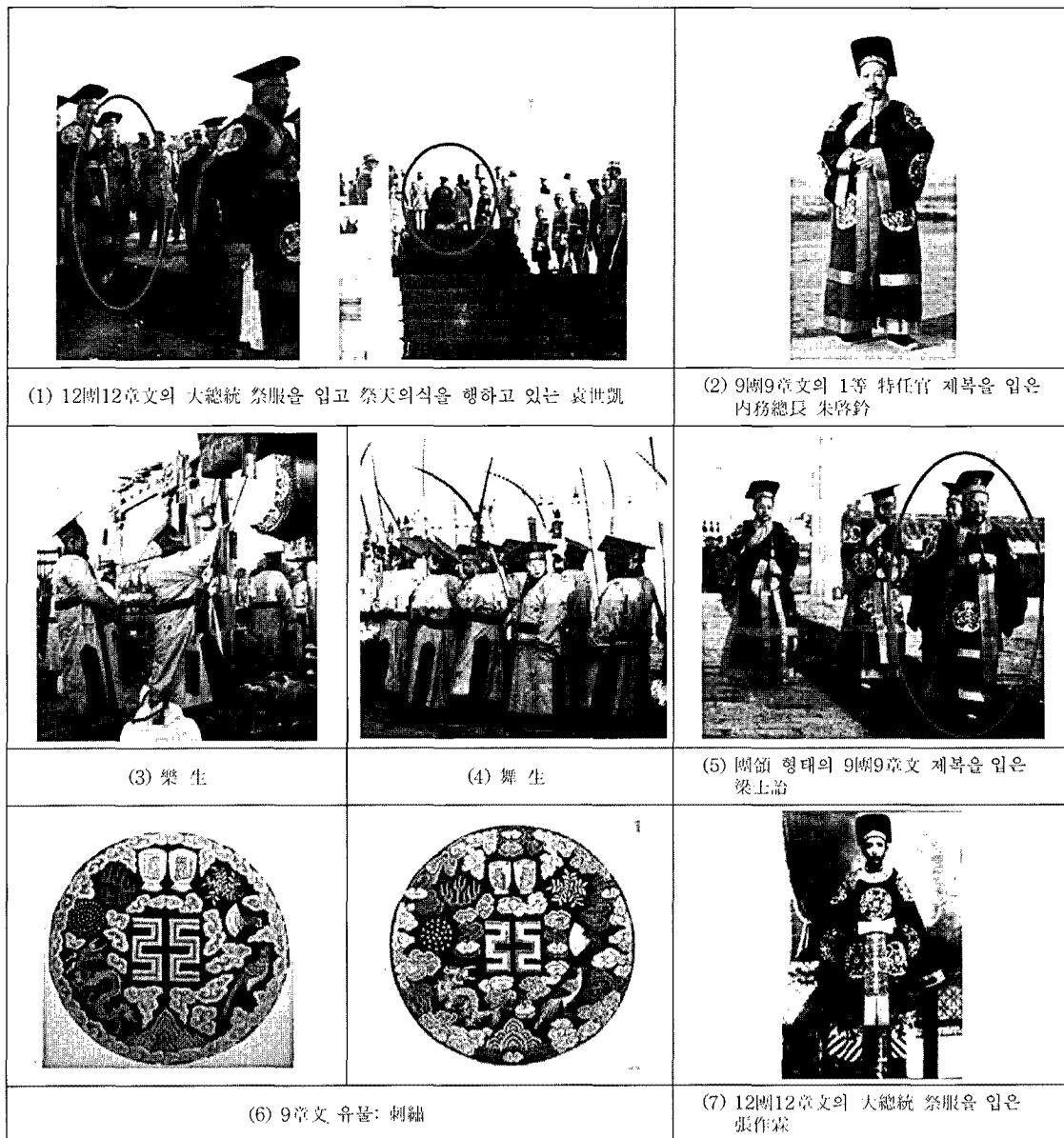
위안스카이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자신이 제정한 『제사관복제』의 규정대로 祭服을 만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입게 한다. 이 제도는 앞서 본 것처럼 고대 제복을 복원한 것으로, 고대 제복의 복원은 황제체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고대 帝王의 제천의식은 바로 하늘의 뜻[天命]에 의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受命 사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는 이에 걸맞는 제복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사관복제』에 규정된 제복을 입고 의례를 행한 모습은 현재 많은 사진자료로 남아있어 당시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 속 인물들 중에는 위안스카이를 포함하여 관원과 악무생 등이 보인다. 관원 중에는 『제사관복제』의 경위서를 작성한 쭈치첸도 있는데, 그는 1등 관원의 제복인 직령 형태의 9團9장문의 옷을 입고 있다. 또 단령 형태의 9단9장문 제복이 있는데 이 옷은 제도에는 규정되지 않았고, 위안스카이의 稱帝를 적극 지지하고 交通系의 首領을 맡아 재정 지원을 전담했던 량스이(梁士伊: 1869~1933년)가 입은 모습에서 확인된다(그림 8(1))~(그림 8(5))(『제사관복제』에 의하면 단령 형태의 제복은 대총통만 입을 수

있고 나머지 신분은 모두 직령인데, 량스이가 입은 옷은 단령임. 무너는 9단9장문으로 1등 관원과 같음. 따라서 제도에는 없는 9단9장문의 단령 제복이 별도로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때의 제복은 유물로도 남아있다. 현재 북경 군사박물관에 소장된 1등 관원의 제복 일습이 있고, 제복에 썼던 9장문 자수가 있다(그림 2), (그림 8(6)). 이 밖에 1926년 대원수에 취임한 후 위안스카이를 모방하여 황제 즉위를 준비했던 장쭤린(張作霖: 1873~1928년)이 대총통의 제복을 입은 모습도 보인다(그림 8(7))(장쭤린은 황제로 등극하지는 못했으나, 한국에서 간행되던 『中外日報』(1927년 11월 3일)에 “戰魔王 張作霖이 皇帝即位準備說(袁世凱의 故智에 傷하야 老大國에 肯臨코자 - 北京市巷에 傳하는 珍聞)”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것으로 보아 황제 등극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에서 대총통 제복을 입은 것으로도 이 사실이 증명됨.).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을 맡은 초기부터 황제즉위를 생각했는가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다. 대개 애초부터 황제체제로의 복귀를 생각했고 대총통 취임 직후부터 이를 준비한 것으로 보지만, 이와 달리 당시의 사회·정치·사상 등 여러 방면의 주변요인이 후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陸銀均, 1984). 언제부터 위안스카이가 제제부활을 생각했는가에 관해서는 정치사적인 쟁점이 부족한 필자로서 어떤 의견을 제기하기가 어려우나, 祭孔令과 『제사관복제』의 제정을 명령한 1914년 전반기에는 이미 칭제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무총장 쭈치첸은 『제사관복제』의 제정 경위를 말하면서 대총통인 위안스카이의 명을 반들어 ‘祀天冠服’을 준비했다고 하였다.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전통왕조로의 복귀를 직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주재하는 최고통치자로서의 대총통은 곧 황제와 같은 신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천관복’의 제정은 칭제의 의지와 직결되는 것이다. 또 쭈치첸이란 인물은 당시 내무부 총장으로서 위안스카이가 황제로 등극하는 의례를 준비한 大典準備處의 處長을 맡기도 했었다. 그는 위안스카이의 칭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인물로서, 어느 면에서 보면 위안스카이의 칭제의지를 더욱 부추겼을 인물이다. 따라서 위안스카이가 칭제를 염두에 두고 ‘祀天冠服’의 제정을 명령한데서 그치지 않고, 『제사관복제』의 세부 형태 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림 8> 1914년 제정 祭祀冠服 착용 모습

자료출처: 高春明. (2005). p. 531, 538; 歷史博物館裏的袁世凱是一個部級以下官員假冒的. (2008). <http://xunshan.blshe.com>; 着“祭服”的張作霖. (2009). <http://blog.sina.com.cn>

그렇다면 위안스카이가 『제사관복제』의 세부형태를 규정함에 있어 역대의 대표적인 제복인 면복 대신 작변복을 채용하고자 한 이유는, 혹은 면복의 요소를 주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변복을 채용한다고 친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제사관복제』에 언급

된 ‘大同’의 의미를 파악하는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대동’의 의미는 고대 면복과 작변복의 착용신분 및 근대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고대의 면복과 작변복은 착용신분이 구별된다. 면

복은 대부 이상의 신분만이 입을 수 있었다. 천자·제후·대부·사로 대별되는 계급질서 속에서 면복은 上 계급이 입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배층 가운데 좀 더 상층의 신분인 대부 이상과 사를 차별화시키는 복식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작변복은 사 또한 제복으로 입을 수 있었다. 즉 작변복을 채택하면 사까지도 지배층의 질서 속에 편제시킬 수 있게 된다.

위안스카이와 그의 제제부활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전통질서체계로의 복귀를 꾀하면서 면복과 작변복의 이런 특징에 주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중화민국의 설립과 함께 이미 공화정체제로 들어선 시기에 역사의 흐름을 돌려놓는 제제부활을 시도하면서 좀 더 넓은 지지계층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 즉 紳士계급을 겨냥을 필요가 있었고, 그 수단 중의 하나로 작변복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紳士’는 본래 ‘紳’과 ‘士’로 나뉨. ‘紳’은 공식적으로 관료제도를 구성하는 관인계층이고, ‘士’는 비공식적으로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지방학자집단임(웨이크만, 1975/1987)). 그러나 근대의 신사계층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자 관료로 있는 신사, 재야의 상층 신사, 재야의 향신 즉 중하급 신사로 나눌 수 있음(陣志讓, 1980/1993). 당시 신사계급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구에서 들어온 민주주의와 공화정체제를 경험한 ‘근대’라는 시기에, 이들의 반발은 곧 제제부활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사 계급을 염두에 둔 것은 「설명서」에서 언급한 아래 문구에서 확인된다.

“살피건대 작변은 옛날에 또한 祭冠으로 삼던 것으로, 천자에서 사까지 모두 이를 통용했다.”(謹案, 爵弁古時亦爲祭冠, 天子至士皆通用之.)

“옛날에 작변에는 모두 현색 상의와 훈색 치마를 입었으니, 천자에서 사까지 통용하는 옷이었다. 지금 뜻은 ‘大同’을 취하여 제관에서 이미 작변을 취했으므로 제복도 저절로 이를 같이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현의 훈장을 채용하는 이유이다.”(古時, 爵弁皆玄衣纁裳, 自天子至士通用之服, 今義取大同, 祭冠既採用爵弁, 則祭服自宜同之, 此採用玄衣纁裳之原由也.)

제관과 제복에서 ‘사까지 통용하는’ 작변복을 취하고, 이를 통해 ‘大同’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으며, 「설명서」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 전통사회에서 사계급은 Chang Chung-li가 “백성이 관리의 훈령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들(士계급)에게 의존해야 한다”(웨이크만에서 재인용, 1975/1987)

고 특성을 규정지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위정자에게는 반드시 포섭해야 할 대상이었다. 1895년 청일전쟁 패배 이후 중국을 변혁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던绅士계층에게(陣志讓, 1980/1993) 위안스카이의 제제부활운동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통치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1901년 베이징의 정서[北京議定書: 辛丑條約] 이후 재야 신사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고(陣志讓, 1980/1993), 이미 민주주의에 눈을 뜯은 이들 계급을 폭력적인 수단으로만 제압할 수 없었기에, 위안스카이는 반발에 대비해 ‘大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대동’을 강조하여 분열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동’사상은 애초에 원세개가 내세운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오랜 전통사상이었다. 「禮記」「禮運」에 ‘대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위대한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적(公的)인 것이 되어 협명하고 능력있는 자를 선발하며, 신의를 익히고 화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또 자신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에게는 수명을 다하게 해주고, 젊은이에게는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에게는 자랄 수 있게 해야 하고, 흙아비·과부·고아·자식없는 사람·몹쓸 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 부양받을 수 있게 한다. 남자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시집갈 곳이 있다. 재화는 그것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구태여 쌓아두지는 않는다. 노동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가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구태여 제 봄만을 위하여 하지는 않는다. 이런 까닭에 간사한 죄가 막혀서 일어나지 않게 되고, 도적질과 어지럽하고 해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깥 문이 있어도 닫지 않는다. 이를 대동(大同)이라 한다.”(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修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貳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

중국의 전통사상인 ‘대동’이 근대 사회에 다시 대두된 것은 위안스카이의 제제부활을 반대했던 강유웨이(康有爲: 1858~1927년)에 의해서였다. ‘대동’사회는 유가 이상정치의 목표였는데(崔京玉, 2001), 강유웨이는 이 중국 고대의 사상을 재창조해서 가족과 국가를 소멸시키고 자유·평등·우애를 기초로 하는 무계급사회를 이상사회로 구상하였다(池田誠, 1967/1985). 같은 시기에 손문 또한 ‘대동’의 가치를 내걸고 대동사회[대동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원세개가 제복제도를 정하면서 ‘대동’을 언급한 것은 일면 좀 더 넓은 지지계층을 확보하고 또 당시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士계급을 포섭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일면 반대세력이 내세우는 ‘대동’ 이론을 적용해 상대를 이론적으로 설득시키고 그들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 문제는 정치사적인 문제로 이미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므로 본고는 문제제기 정도에서 논술을 그치고자 한다.

V. 맷음말

고대 중국에서 제복으로 사용된 옷으로는 면복과 작변복이 있다. 이 두 복식 중 먼저 탄생한 것은 작변복이고, 면복은 周代에 작변복을 모태로 탄생하였다. 면복이 탄생한 후 작변복의 지위는 면복 다음으로 밀려서 면복보다 한 등급 아래의 옷으로 입혀진다. 면복은 천자부터 대부까지의 신분이 입는 제복이 되지만, 작변복은 이들보다 아래 신분인 士계급의 제복이 되는 것이다. 좀 더 낮은 계급까지 입었다는 것은 곧 착용범위에 있어 면복보다 작변복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의미한다. 위안스카이는 1914년에 전통식 제복을 규정하면서 이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紳士계급을 포섭하고자하는 의도를 제복 제정에 투영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사관복제』는 대총통 위안스카이의 명에 의해 1914년 8월에 제정된 제복제도이다. 대총통 이하 1등 특任官부터 5등 士庶까지의 祭冠·祭服·帶·中衣·靴로 구성되는 제복을 규정하였고, 이 외 樂生과 舞生의 관복이 포함된다. 제도를 제정함에 있어 기본원칙이 된 것은 고대 제도의 복원, 간편함의 채용, 현실의 수용, 상징성 함유 등이었다. 고대 제도의 복원 의지는 작변복의 채용과 무늬에 따른 신분의 구별 등에서 나타나고, 이를 통해 고대 성현들을 본받는 의미를 취하고자 하였다. 간편함을 취하고자 한 것은 패옥과 폐슬의 제거, 5등 사서의 제복에서 乙種常禮服 착용의 허가, 중의의 허리 재봉선을 없애고 통으로 된 형태를 채택한 것, 악무생관복의 심의 채용 등에 나타난다. 현실상황을 수용한 것은 ‘마땅함을 죽는다[從宜]’라는 말 속에 나타난다. 마땅함을 죽어야 이미 단발을 한 상태이므로 제관에 비녀를 쓰지 않았고, 관끈도 비녀가 없을 때 사용하는 纓을 취했으며, 신은 鳥이 아닌 靴를 사용하였다. 상징성의 함유는 제관의 관장과 제복

의 12장 무늬에서 나타난다.

『제사관복제』에서는 복식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대의 작변복을 취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작변복이 아닌 면복의 특징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음이 파악되었다. 면복의 요소가 주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변복을 취했다고 밝힌 이유는 복식의 형태를 규정한 배경을 서술한 「설명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작변복을 취한 이유는 ‘대동’을 취하기 위함이었고, ‘대동’의 의미를 취하는데 작변복을 택한 이유는 이 옷이 ‘天子’에서 士까지 모두가 통용하는 옷’이었기 때문이다. 위안스카이는 당시 지식인을 대표하는 신사계급이 자신의 제제부활 시도에 반대할 것을 우려하여, 작변복을 내세워 이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복을 주로 채용했으면서도 작변복을 취했음을 표방함과 함께 이를 근거로 ‘대동’을 강조한 것이다. 이 외 근대 중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제제부활을 두고 대립관계에 있던 칭유웨이나 손문 등의 세력을 의식하여 그들이 내세우는 ‘대동’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주공화정체가 이미 실시되고 또 서구식 민주주의 의식이 이미 유입된 ‘근대’라는 시기에 위안스카이는 시대에 역행하게도 제제부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역시 전통사상과 제도의 복원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자 시도했다. 머리말에서 필자는 ‘사회의 식의 변화와 역행하여, 복식을 통해 사회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본고에서 살핀 위안스카이가 『제사관복제』를 통해 ‘大同’을 강조하면서 신사계급과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려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안스카이는 위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1915년 12월 12일에 황제로 등극하지만, 이 시도는 83일만에 실패로 돌아간다. 그는 1916년 3월 22일 군주제 폐지와 함께 ‘洪憲’ 연호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의 회복을 선포하게 된다. 이어 제제부활의 실패로 인해 매우 낙담하여 같은 해 6월에 요독증과 신경쇠약으로 죽는다.

참고문헌

- 웨이크만, F. (1975). 中國制國의 물령. 김의경 옮김 (1987). 서울: 예전사.
최규순. (2010). 『대한예전』(大韓禮典) 복식 제도 연구. 아세아

- 연구, 53(1), 183–218.
- 李學勤 主編. (1999). 周禮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李學勤 主編. (1999). 儀禮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李學勤 主編. (1999). 禮記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榮昌. (1933). 獨斷. 京城: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 後漢書. (1965). 北京: 中華書局.
- 晉書. (1966). 北京: 中華書局.
- 宋書. (1974). 北京: 中華書局.
- 祭祀冠服制. (1914). 北京: 政事堂禮制館 간행.
- 祭祀冠服圖. (1914). 北京: 政事堂禮制館 간행.
- 高春明. (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 高春明. (2005). 錦繡文章 - 中國傳統織繡紋樣.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 陸銀均. (1984). 袁世凱 帝制復活運動 背景에 對한 考察. 論文集-今明여자대학교, 25, 123–157.
- 王宇清. (2005). 萬古中華服裝史. 台北: 輔仁大學出版社.
- 池田誠. (1967). 중국현대역명사. 韓善模 옮김 (1985). 서울: 青史.
- 陣志讓. (1980). 軍紳正權 - 근대 중국 군벌의 실상. 박준수 옮김 (1993). 서울: 고려원.
- 崔京玉. (2001). 禮 理念의 전개. 인문과학논총-경성대학교, 4, 323–335.
- 崔圭順. (2007). 中國歷代帝王冕服研究. 上海: 東華大學校出版社.
- 戰魔王 張作霖이 皇帝即位準備說. (1927, 11. 3). 中外日報, p. 1.
- 鮮爲人知的歷史: 馮國璋梁啟超曾被袁世凱矇騙. (2008, 3. 26). 華夏文明. 자료검색일 2010, 2. 1, 자료출처 <http://www.google.co.kr>
- 歷史博物館裏的袁世凱是一個部級以下官員假冒的. (2008, 8. 27). 舛跚的博客. 자료검색일 2010, 2. 1, 자료출처 <http://xunshan.blshe.com>
- 連發尊孔令和祭孔令 袁世凱導演民國首次官祭孔子. (2007, 1. 4). 星島環球網. 자료검색일 2010, 2. 2, 자료출처 <http://www.stnn.cc>
- 着“祭服”的張作霖. (2009, 3. 12). 沖鋒的步兵的BLOG. 자료검색일 2010, 2. 1, 자료출처 <http://blog.sina.com.cn>